

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8. 5. 6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년 4월 16일 영등포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1998년 4월 25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1998년 4월 28일 제56회(임사회) 제2차 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자 : 도시정비국장 이종현)

가. 제안이유

하수도법 개정으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영등포구의 과태료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법집행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과태료부과대상 (안 제2조)
- 위반행위시 조사확인등 (안 제3조)
- 과태료납입고지 (안 제3조)
- 이의신청 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유제한)

조례제정은 '97.3.7일 법률 제5300호에 의거 하수도법이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'97.9.5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.

중요내용은 제2조(부과대상)의 범위를 7개호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(위반행위조사확인 등) 조사확인을 통하여 과태료부과를 하도록 하고 상대자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제5조(과태료의 납입고지)징수결정이 된 때에는 납입자의 준수사항 및 납입에 관한 안내를 하였으며 제9조(이의신청)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일정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임

4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(안)

의안 번호	16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4. 16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하수도법 개정으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영등포구의 과태료 징수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법집행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과태료 부과대상 (안 제2조)
- 위반행위의 조사, 확인 등 (안 제3조)
- 과태료 납입고지 (안 제5조)
- 이의신청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 규 :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4항
- 나. 예산 조치 : 필요없음
- 다. 합의 사항 : 없음
- 라. 조례 안 : 별첨

첨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과대상) 하수도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
2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
3.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
4.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
5.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,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
6.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7.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

제3조(위반행위의 조사 확인 등)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

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4조(징수결정) 법 제4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.

제5조(과태료의 납입고지)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, 성명, 납입금액, 납입장소, 회계연도,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과 기타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
②납입자의 주소 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, 배달증명으로 송부한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구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납입기한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20일내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수납부 등)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독촉을 한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체납독촉 등) ①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내에 10일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방세체납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제9조(이의신청)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제10조(이의제기의 법원통보)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방세 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를 준용한다.